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13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926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13561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강성백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1.

접수 제362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1. 접수 제362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D는 2015. 10. 22. C와 부산 사하구 E 전 878㎡ 중 151/878 지분, 부산 사하구 F 대 71㎡ 중 30/71 지분을 대금 104,67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3.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C는 2015. 11. 30.까지 D에게 위 매매대금 104,67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2) D는 2016. 12. 16. C를 상대로 '84,6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6차107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5. 확정되었다.

- 3) D는 2019. 1.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C 소유인 부산 사하구 G 지상 건물, 부산 사하구 H 지상 건물, 부산 사하구 I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J,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4) D는 2018.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15. C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5) 원고는 2020. 7.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권금액 162,408,374원(= 원금 84,678,000원 + 이자 77,625,174원 + 비용 105,200원) 중 84,175,323원을 배당받았다.

나. C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 1) C는 2016. 12. 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원고는 별지1 목록을 제출하였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산 사하구 K 도로 140㎡ 전체가 아니라 그중 100/140 지분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별지2 목록이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2) C는 2019.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985,321,232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주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2.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9. 6.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공동담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상 목적물인 건물 3채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를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2019. 6. 2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0. 9. 2.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은 2019. 1. 8.이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2019. 6. 21.이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는 2019. 4. 4.인 사실, 원고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2020. 7.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4,175,323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피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2019. 6. 21.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인 C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양수하여 C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C는 2019.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부산 사하구 K 도로 140㎡ 전체(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가 아니라 그중 100/140 지분(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신탁을 위한 채권양도 주장

1) 피고의 주장

D가 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신청채권자로 참여한 것을 보면 진정한 채권자는 D인데, D의 주소가 여주시인 사정 때문에 부산에 주소가 있는 원고에게 소송상 권리 행사를 위탁하기 위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소송신탁을 위해 위 채권양도를 다시 이용하는 것이다. D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을 위한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채권양도가 이미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C의 사해의사가 부존재하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C는 2015. 5. 29.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M 일대 18,688㎡에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450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인 N은 2015년 가을 무렵 피고의 사내이사인 O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O는 자신의 아들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P에게 피고를 통해 C에 사업자금, 특히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2016. 11. 4. C에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P는 N이 30억 원을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하나씩 확인하고 매매의사가 확인되면 매매대금의 지출을 승인해 주었다.

이후 C는 피고에게서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9. 6.경 C에 사업자금을 계속 빌려주길 바란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C는 최대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 빌리는 것만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는 C에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손해를 입고 있었고, C가 청산될 경우 채권총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아가므로 C의 재산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배당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위에서 보았듯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갑 제6호증의 1부터 6,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3호증부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는 2011. 1. 7. 설립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P이다. P는 2016. 11. 4.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7. 7. 5. C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20. 2. 18.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C는 2019.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는데, 당시 C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P로서 동일하다.

나) C는 2016.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L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C는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985,321,232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 위해 신탁재산을 귀속시켰고, 그 즉시 신속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 C는 2019.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6.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3,698,673,553원에 이르지만, 2020. 12. 28.을 기준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3,964,102,093원으로서 증가된 금액은 265,428,540원에 불과하다. C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것보다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1)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목록

- | | | |
|-----------|---|---------|
| 1. 부산 사하구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div> | 도로 17㎡ |
| 2. 부산 사하구 | | 도로 140㎡ |
| 3. 부산 사하구 | | 도로 75㎡ |
| 4. 부산 사하구 | | 대 99㎡ |
| 5. 부산 사하구 | | |

(도로명 주소 : 부산 사하구

조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

주택(3가구)

1층 57.35㎡

2층 52.65㎡

- | | | |
|-----------|---|--------|
| 6. 부산 사하구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20px;"></div> | 도로 16㎡ |
|-----------|---|--------|

-끝-

(별지2)

1. 부산 사하구 Q 도로 17㎡
2. 부산 사하구 K 도로 140㎡ 중 100/140 지분
3. 부산 사하구 R 도로 75㎡
4. 부산 사하구 S 대 99㎡
5. 부산 사하구 S

[도로명주소] 부산 사하구 T

조표 U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3가구)

1층 57.35㎡

2층 52.65㎡

6. 부산 사하구 V 도로 16㎡, 끝.

